

## 2. 대출제한대상

- 채무자[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, 법인, 법인의 (공동)대표이사]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

\*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자,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세금체납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</li> <li>- 징수유예(납부고지의유예, 납부기한등연장)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</li> <li>- 체납처분유예(압류매각유예)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</li> </ul>   |
| 2. 신용정보등록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<b>신용도판단정보*</b>, <b>공공정보**</b>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</li> <li>* <b>신용도판단정보</b> :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</li> <li>** <b>공공정보</b> : 세금.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.개인회생.파산면책 결정, 산재·고용보험료 체납, 임금체불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, 새출발기금(채무조정) 등</li> </ul>   |
| 3. 연체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~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b></li> <li>① 현재 연체 중</li> <li>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</li> <li>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</li> </ul>  |
| 4. 자가(임차)사업장, 자가주택 권리침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자가(임차)사업장·자가주택*</b>에 대한 <b>권리침해사실**</b>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<b>권리침해해제시점(등기접수일자 기준)</b>이 3개월 이내인 경우</li> <li>* <b>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자가사업장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(대표이사), 대표자(대표이사)의 배우자, 대출신청 법인, 실제경영자,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</li> </ul> </li> <li>- <b>자가주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표자(대표이사),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(대표이사), 대표자(대표이사)의 배우자, 대출신청 법인, 실제경영자,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** <b>권리침해사실 기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</li> <li>-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(임차주택 제외)</li> <li>- 단,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,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~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</li> <li>① 대출 신청일 현재 해제 사유가 발생(해제된 경우 포함)되고, 권리침해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</li> <li>② 권리침해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</li> </ul> </li> </ul> |

| 구 분              |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5. 휴·폐업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업체가 <b>휴·폐업 중인</b> 경우</li> <li>*<b>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</b></li> </ul>   |
| 6.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<b>연도가 바뀌더라도</b>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접대출 심사·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(부결)된 경우 → <b>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</b></li> <li>2.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(실효)하는 경우* → <b>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</b></li> </ul> </li> <li>*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,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</li> <li>3.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→ <b>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</b></li> </ul>   |
| 7. 한계기업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%이상 감소한 기업</li> <li>2. 당기(직전회계연도)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</li> <li>3.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(영업이익/이자비용) 1.0미만인 기업</li> </ul> </li> <li>- 예외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</b></li> </ul> </li> </ul>  |
| 8. 부채비율 700% 초과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<b>부채비율 700% 초과</b> 업체 (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)</li> <li>- 예외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</b></li> </ul> </li> </ul>   |
| 9. 매출액 초과 차입금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*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<b>매출액(당기 매출액**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) 대비 100% 초과</b>하는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총차입금 : 신용공여정보조회 상 대출잔액 합계</li> </ul> </li> <li>- 법인기업 : 법인 명의 대출 (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 제외)</li> <li>- 개인기업 : 대표자 명의 기업대출 (공동대표자 명의 대출 제외)</li> <li>** '19년도·'20년도·'21년도·최근1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</li> <li>- 예외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</b></li> </ul> </li> </ul> |

| 구 분  | 내 용   |
|--|---|
| 10. 공단에서<br>대출제한대상으로<br>관리 중인<br>다음 각호의<br>어느 하나에<br>해당하는 기업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단에서 <b>성공불용자 '고의실패'</b>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(대표이사)가 운영하는 기업(법인 포함)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</li> <li>2. 공단에서 <b>대출사고기업</b>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(대표이사)가 운영하는 기업(법인 포함)</li> </ol> |
| 11. (법인기업)<br>책임경영심사<br>관련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책임경영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|
| 12.<br>사회적 물의  | 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|
| 13. 허위 또는 부정<br>신청, 목적 외<br>자금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,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|
| 14. 정책자금<br>지원제외 업종  | - [참고] ' <b>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업종</b> ' 참조  |